

노동관계 전문가, 당신의 든든한 파트너 노무법인 호평



노무법인 호평
Hopyung HR Labor Consulting



수신자 수신자 참조
(참조)

제 목 근로기준법 개정 및 시행 사항 안내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 최근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시행 예정임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해당 내용을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개정법률 : 근로기준법 제54조 및 제60조

나. 개정내용

- 1) 기존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반드시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했어야 하나, 법 개정에 따라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이용하지 아니할 것을 명시적으로 요청한 때에는 휴게시간 30분을 부여하지 않아도 되도록 개정됨
- 2) 기존에는 연차유급휴가를 일 단위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고 사업장 자체적으로 반차, 반반차 등의 제도를 운영하도록 하였으나, 법 개정에 따라 시간 단위 및 일수의 범위에서 연차휴가 분할사용이 가능하며 근로자의 시간 단위 연차 청구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도록 개정됨

다. 신규법비교

구분	내용	시행일
제54조 (휴게)	기존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2026.12.10.
	개정안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다만,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로서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이용하지 아니할 것을 명시적으로 요청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0조 (연차 유급휴가)	기존 없음(일단위 사용 원칙)	2027.6.10.
	개정안 ⑤ 사용자는 근로자가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단위 및 일수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청구한 때에는 이를 부여하여야 한다. ⑨ 사용자는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청구 또는 사용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노무법인 호평 대표 노무사



(수신참조) 노무법인 호평 충청지사 회원사

담당 (기안) 김은정 대표노무사 (결재6/19) 강상훈

협조자

시행 IHP-2606022-001 (2026.06.22.) 접수

우 31198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13, 성지하이츠1차 917호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9로 1, 605호(청오법조빌딩)

전화 02-588-9358 전송 02-556-9329 / goodlabor1365@naver.com /
041-565-6660 070-7966-5660